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3301 |
|----------|------|

2025년 12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아이수루 의원(찬성자 23명)
- 나. 제안일 : 2025년 10월 20일
- 다.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아이수루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문자해독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독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은 물론 공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표창 근거 마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도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10. 28. ~ 11. 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문해교육(문자해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음(안 제10조).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u>제10조(표창)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 |

- 안 제10조는 시장이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해교육 종사자 및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격려하고, 그 성과와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의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자치구 공무원 및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기관, 자치구, 자치구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서울시 성인 문해교육 추진 현황 〉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체계

| 기 관 | 분 야 | 문해교육 지원사업 |
|--------------------------------|----------------|--|
| 서울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비학력 (학력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행(총괄) •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25년 3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교육(기초문해교육 4개, 문해교육특성화 26개) - 학력보완(초등 검정고시 프로그램 1개) *사업공모 및 선정, 보조금(개소당 3백만~5백만원) 교부 |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력·비문해자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25년 40개소) *사업공모 및 선정, 보조금(300/500/700만원) 교부 - 문해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역량 강화 연수(연 2회) •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사업 추진(국비 지원) • 문해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문해교육 매니저 운영 등 |

□ 사업예산(2025년 기준)

- 평생교육국 : 152백만원 (사무관리비 2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백만원)
- 평생교육진흥원 : 450백만원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300백만원, 광역 문해교육 기반 구축 50백만원,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100백만원)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2025년)

| 구 분 | 분 야 |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단체 |
|---|--------------------------|--|
|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과) | 기초문해교육(41개) 검정고시(1개소) | (강서)등촌1 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양천해누리복지관, (구로)온수어르신복지관, (영등포)서현학교 (노원)마들같이 |
| | 문해교육특성화 (26개소) | (강서)강서구립가양도서관, (노원)노원여성교육센터, (성동)성동구립용답도서관, (동대문)푸른사람들, (은평)서부장애인복지관, (성동)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성북)상월곡실버복지센터, (광진)구립자양노인복지관, (강서)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강서)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은평)은평구립연촌노인복지관, (은평)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강서)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 (관악)난곡사랑의집, (성북)정릉실버복지센터, (은평)구립은암노인복지관, (관악)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마들종합사회복지관, (은평)구립갈현노인복지관, (은평)구립대조노인복지관, (은평)불광노인복지관, (강북)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금천)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장애인아카데미, (구로)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영등포)삼성실업학교 |
|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평생교육 진흥원) | 디지털 문해학습장 (40개소) | (강동)고덕평생학습관, (강북)강북구평생학습관, (강서)강서평생학습관, (강서)강서구립가양도서관, (관악)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관악)관악구평생학습관, (광진)상일학교, (광진)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진)광진구평생학습센터, (광진)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로미래도서관, (금천)금천구평생학습관, (노원)노원여성교육센터, (노원)노원평생학습관, (노원)월계종합사회복지관, (도봉)도봉구평생학습관, (동대문)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청량정보고등학교, (동작)본동(흑석)종합사회복지관, (동작)대방종합사회복지관, (동작)동작종합사회복지관, (마포)마포평생학습관, (서대문)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서대문구인생케어평생학습관, (서대문)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성동)성동구립용답도서관, (성북)성북구재가노인복지기관, (양천)양천구평생학습관, (양천)목동어르신복지관, (영등포)서현학교, (영등포)YDP성인문해교육센터, (영등포)영등포평생학습관, (용산)갈월종합사회복지관, (은평)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구립갈현노인복지관, (종로)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구)신당아학, (중구)한국여성생활연구원, (중랑)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중랑)작은사랑태청아학 |

출처 :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작성

- 본 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해교육 종사자 및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표창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원안 동의)을 제출하였음.
- 다만, 표창 수여의 기준('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은 공로의 범위와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행정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성이 존재하고, 수여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경우 수혜자 선정의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별도의 기준과 절차 및 문해교육 분야의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3301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아이수루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경,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김형재,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최기찬, 최재란,
한신, 홍국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문자해독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독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은 물론 공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표창 근거 마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도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u>제10조(표창) 시장은 문해교육 활</u> <u>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u> <u>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u> <u>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u> <u>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 |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실질적인 재정수반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10조는 표창관련 규정으로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므로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 정도의 소액만 소요되기에 해당 개정이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